

등록번호	총무과-16529
등록일자	2016.5.31.
결재일자	2016.6.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총무팀장	총무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안광현	최병열	김종석	박희균	황치영	06/02 최창식
협 조	주무관 의회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	서채원 이창하 권순우			

## 『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』 일부개정 계획



행정관리국  
총 무 과

# 『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』 일부개정 계획



차량교체기준 개선 친환경차 구매의무 조항 및 공용차량 관리 강화 규정 신설등 우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현행 규정 등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차량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

## I 관련 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교체기준 제도개선 [안전행정부 공가업과-239(2014.1.10.)]
-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강화 [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-1944(2015.08.24.)]
- 『물품관리법』 제16조의2 (물품의 내용연수)
- 『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』 제2조(자동차의 종별 구분)
- 『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0조의2 (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)

## II 개정 이유

- 행자부 제도개선 통보에 따른 공용차량 교체기준 개선
- 차량임차 수요 증가에 대비, 임차차량의 정의 및 정수범위 명시
-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조항 신설 및 차량정수기준 개정
- 공용차량 사용·처분 등 관리 조항 강화
- 기타 어려운 법률 용어 순화 및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 개정

### Ⅲ 주 요 내 용

#### □ 공용차량 교체기준 개선

○ 『물품관리법』 상 차량별 내용연수는 각각 상이하나 우리구 『공용차량 관리규칙』 상 차량 내용연수는 일괄 7년으로 규정되어 상충되는바 개정 필요

※ 물품관리법 상 차량내용연수 : 승용·승합 8년, 청소·화물차 7~8년, 구급차 5년 등

○ 행자부 제도개선 권고 및 『공용차량 관리 규정』의 공용차량 교체 기준 개정에 따른 우리구 규칙 교체기준 개선

※ 개정내용 : 승용(업무용), 승합(중형이하), 화물차량이 최단운행연한 10년을 초과할 경우 교체가능

#### <공용차량 교체기준 개선 세부내용>

구 분	현 행	개선안	비 고
승용 전용 및 의전용	최단운행연한 7년 초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	물품관리법상 내용연수(8년) 초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	현행보다 강화
승 용 (업무용)	최단운행연한 7년 초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최단운행연한 10년을 초과</u></li> <li>• 물품관리법상 내용연수(8년) 초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</li> </ul>	현행보다 완화
승 합 (대 형)	최단운행연한 7년	물품관리법상 내용연수(8년) 초과	현행보다 강화
승 합 (중형 이하) 및 화물	최단운행연한 7년 초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최단운행연한 10년을 초과</u></li> <li>• 물품관리법상 내용연수(8년) 초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</li> </ul>	현행보다 완화
특 수	최단운행연한 7년	물품관리법상 내용연수 초과	차종별 상이

※ 구 규칙 <별표1> 차종별 차형·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 개정

□ 차량의 정수 범위에 임차차량 포함

- 임차(리스)차량 수요 증가에 대비 구 규칙상 차량의 범위에 임차차량을 포함하고 임차차량은 정수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명시 (규칙제2조 및 제5조)

구 분	현 행	개선안	비 고
임차차량 정수 명시	규정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차량의 정의에 임차차량 포함</li> <li>· 임차는 정수범위 내에서 가능</li> </ul>	신설

□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조항 신설 및 차량정수기준 개정

- 대기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 친환경차량 구매 의무를 강화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, 우리구 규칙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 (규칙제8조의2)
- 부서 일반 직원의 직접운전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경형·소형차량 구매 증가를 위해 차량정수기준 개정 (규칙 별표2)
  - 승용(업무용)·화물 및 특수 등 정수의 차량구분을 없애고, 차량의 총 정수를 현행대수(총 138대)로 유지 및 감축

구 분	현 행	개선안	비 고
친환경 차량 구매	규정없음	각 관리부서의 경형차량 및 친환경차량 구매 노력 의무	신설
차량 정수 기준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승용차량 : 차형·용도별 정수제한</li> <li>· 승용차량 이외 : 적정 차형과 대수 배정 (실질적으로 정수제한 없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용·의전용 : <u>현행 유지</u></li> <li>· 업무용 차량(모든 차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차량구분 삭제</li> <li>- 차량의 총 대수를 현행대수 (138대)로 유지 및 감축</li> </ul> </li> </ul>	개정

□ 공용차량 사용·처분 등 관리 조항 강화

- 『공무원행동강령』 제13조에 의거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이용금지 조항 및 공용차량에 공무용 표시의무 조항 신설 (규칙제16조제4항)
- 공용차량 노후로 인해 차량 교체 시 6개월 이내에 매각 등 처분 및 예산지출 최소화 의무 조항 신설 (규칙제11조제3항)

구 분	현 행	개선안	비 고
차량 사용 관리 강화	규정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용차량 사적사용 금지</li> <li>• 차량 외부 공용차량 표시</li> </ul>	신설
차량 처분 관리 강화	규정 없음	차량 교체시 6개월 이내에 매각 등 처분하고 기존차량 유지예산 최소화	

## □ 기타 어려운 법률 용어 순화 및 법령개정사항 등 반영

- 『자동차관리법』 개정사항 및 『도로교통법』 예외조항 반영
  - 『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』 제2조 차량의 정의에 대한 개정사항 및 『도로교통법』 제49조 범죄 및 재해신고 시 운전중 휴대폰 사용 가능 조항 반영
- 차량정수 배정·변경 승인 요청 시 차량구입·유지비 등 소요예산 및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개정 (구 규칙 제6조)
- 차량 관리 관련 제 장부는 전산으로 기록 유지·관리하도록 개정 (구 규칙제12조)
- 각 기관별 관리부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(구 규칙제15조)
- 기타 용어순화 및 오탈자 수정

구 분	현 행	개선안
법 개정 반영	『자동차관리규칙』 제2조제1항(제1호부터 제4호) (규칙제2조)	『자동차관리규칙』 제2조
	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(규칙제23조)	『도로교통법』 제49조에 정한 경우 이외에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
규정 현실화	차량 정수 승인 전 소요경비 예산 계상 불가 (규칙제6조)	차량예산·주차장 확보 후 차량정수 승인 요청
	공용차량 관리 장부를 부서에 비치 (규칙제12조)	공용차량 관리 장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 유지·관리
기관별 관리부서 현행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구청차량 - 총무과</li> <li>2. 청소차량 - 청소행정과</li> <li>3. 장애인차량 - 사회복지과</li> <li>4. 주차단속차량 - 주차관리과</li> <li>5. 동사무소차량 - 자치행정과</li> <li>6. 구의회차량 - 구의회사무과</li> <li>7. 보건소차량 - 건강도시과</li> </ol> (구 규칙 제15조제1항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구본청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업무지원차량 - 총무과</li> <li>나. 청소차량 - 청소행정과</li> <li>다. 장애인차량 - 사회복지과</li> <li>라. 번호판 영치차량 - 세무2과</li> <li>마. 주차단속차량 - 주차관리과</li> </ol> </li> <li>2. 구의회차량 - 구의회사무과</li> <li>3. 보건소차량 - 건강도시과</li> <li>4. 동주민센터차량 - 자치행정과</li> </ol>
	기관의 (규칙제3조 등)	기관 및 부서의
용어순화 및 오탈자 수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의한다 (규칙제6조5항 등)</li> <li>• 당해 (규칙제7조제2항)</li> <li>• 제5장의 (규칙제28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따른다</li> <li>• 해당</li> <li>• 삭제</li> </ul>

#### **IV** 추진 일정

- 부패영향평가,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: 2016년 6월 중
- 입법예고 : 2016년 6월 중 (20일간)
- 조례·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(기획예산과) : 2016년 6월 중
-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: 2016년 7월 중

#### **V** 참고 사항

- 예산조치 : 비예산

**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**